

협성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협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①본 대학교는 미래사회를 열어갈 전문지식, 지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믿음·사랑·봉사를 실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성을 갖춘 봉사인
2. 인격을 갖춘 세계인
3. 능력을 갖춘 전문인

(조개정 2013.8.20.)

제3조 【조직 및 직제】 본 대학교의 조직 및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대학·학부·학과(전공) 및 정원】 ①본 대학교의 대학·학부·학과(전공)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로 입학한 자의 전공은 2학년 진급 시 결정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 【수업연한】 ①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6학기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학연한】 ①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자, 재입학자는 본 대학교에서 수업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13.8.20)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 【학년 및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다만, 제2학기는 2주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일반학기 외에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중이수 교과목의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0.8.14.)

②총장은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4.8.12.)

제9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1일)
4. 하계방학
5. 동계방학

②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 학사편입학 포함)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 학사편입학, 외국인 입학·편입학의 경우에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단, 신학대학 지원자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포함)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제12조 【재입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총 정원 범위의 여석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2.21.)

1. 자퇴·미복학·미수강·미등록으로 인해 제적된 자

2.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자

② 삭제

③ 「학생상벌규정」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개정 2019.2.21)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본교 편입학은 매학기 초 해당학부, 학과, 3학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하되, 해당 학년, 학기수료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학사 편입학은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제 3학년에 이를 허가하되,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한다.

③ 기타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입학지원서류】 ① 본 대학교를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그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2. 최종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된 서류와 납입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학전형】 ①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 및 제64조의 특례입학자의 전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입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조개정 2016.8.22.)

제17조 【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조개정 2018.6.26.)

제18조 【보증인】 ①보증인은 부모, 기타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

제19조 【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③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3.8.20.)

제20조 【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선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제21조 【수강신청확인, 변경 및 철회】 ①수강 신청된 교과목은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②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철회는 소정의 기일 안에 할 수 있다.

③수강신청자가 교양 10인, 전공 7인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6장 교과 이수 및 수업

제22조 【교육과정】 ①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직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전공교육과정은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한다.

③교육과정의 운영과 편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개정 2012.12.28.)(조개정 2013.4.30.)

제23조 【교과목 이수단위】 ①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실습, 실기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③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6)

제24조 【교과목 이수학점】 ①본 대학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2.28.)(개정 2019.12.23.)

②중등학교 정교사(2급) 및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학과(전공)별 교과목 이수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대학, 학과별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5조의2 【원격수업 개설】 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개설 학점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 및 교양 교과목에 개설된 총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재난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조신설 2019.2.21.)(개정 2020.8.14.)

제26조 【계절제 수업】 ①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수강자는 매 학기당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시험 및 성적

제27조 【시험】 ①시험은 매학기의 중간과 학기말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교과목에 따라 수시시험 또는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추가시험은 당해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시험자격】 매학기 각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단,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 【학업성적】 ①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학업성적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 표시하고 D이상과 P는 취득, F 및 NP는 미취득으로 한다.

등급	평점	실점수
A+	4.5	100 – 95
A	4.0	94 – 90
B+	3.5	89 – 85
B	3.0	84 – 80
C+	2.5	79 – 75
C	2.0	74 – 70
D+	1.5	69 – 65
D	1.0	64 – 60
F	0	0 – 59

등급	평점	실점수
P	불계	합격
NP	불계	불합격

제30조 【학사경고】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개정 2016.8.22.)

제8장 학점인정

제31조 【학점의 인정】 ①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말에 소정의 학점을 인정 한다.

②제1항의 수강 교과목 학점 인정과는 별도로 특별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수강 교과목은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며, 제2항의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개정 2013.8.20.)

제32조 【학점의 취소】 ①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졸업생이라도 졸업을 취소하고 그 학위를 박탈한다.

제33조 【특별학점 인정】 ①삭제

②삭제

③(개정 2013.4.30.)(삭제 2013.8.20.)

④(신설 2013.4.30.)(삭제 2013.8.20.)

제34조 【재입학, 편입학, 학사편입학, 전과생의 학점인정】 재입학, 편입학, 학사편입학 및 전과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자기설계전공 (명칭개정 2020.8.14.)

제35조 【전과】 전과는 2개 학기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신청하여야 하며, 희망학과(전공)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되, 이에 대한 자격, 방법,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2.14.)(조개정 2012.9.10.)(조개정 2013.2.26.)(조개정 2013.8.20.)(조개정 2018.2.20)

제36조 【복수전공】 ①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으로서 일반복수전공, 융복합복수전공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2.14.)
②일반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2.14.)

③융복합복수전공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여 만든 교육과정으로서 융복합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2.14.)
(조개정 2012.12.28.)(조개정 2013.4.30.)

제37조 【부전공】 ①부전공은 다른 학과(학부)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으로서 일반부전공, 융복합부전공, 연계부전공으로 구분한다.
②일반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2.14.)
③융복합부전공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여 만든 교육과정으로서 융복합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2.14.)
④연계부전공은 다른 학과(학부)의 전공 2개 이상 연계시켜 이수하는 과정이며, 연계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2.12.28.)(조개정 2013.4.30.)

제37조의2 (조신설 2012.12.28.)(조삭제 2013.4.30.)

- 제37조의3 【자기설계전공】 ① 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기설계전공은 전공 학점 수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자기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4]

제10장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제38조 【휴학】 ① 질병, 병역, 창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9.1.)(개정 2016.8.22.)(개정 2017.1.25.)

②(삭제 2016.8.22.)

③ 휴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9.1.)(개정 2016.8.22.)

제39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군휴학은 동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8.20)
(개정 2015.9.1.)(개정 2017.1.25.)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③ 창업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 기간은 각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9.1.)(개정 2017.1.25.)

제40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41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조치한다.

1. 이중 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2. 학칙 제19조에 의거 소정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삭제(2019.10.21.)
4. 재학년한 내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6. 삭제
7.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수업일수 4주 이상을 무단 결석한 자(신설

2016.8.22.)

8. 기타 학칙 및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제적 결의된 자(개정 2016.8.22.)
제41조의2 【퇴학】 학칙 및 제반규칙에 따라 퇴학으로 징계 의결된 자는 퇴학 조치
한다. (조신설 2019.2.21.)
제42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장 졸업 및 학위

제43조 【졸업 및 수료학점】 각 학년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28.)

(개정 2019.12.23.)

- 1학년 : 33학점 이상
2학년 : 66학점 이상
3학년 : 99학점 이상
4학년 : 130학점 이상

제44조 【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또는 졸업시험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 【학위수여 및 취소】 ①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시험)이나 실기 발표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2]의 학위증서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의 학위 종별은 [별표 1의 ‘가, 나, 다’], [별표1-2의 ‘가,나’]와 같다.

③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2.14.)

④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총장이 취소할 수 있으며, 학위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2.12.)

제45조2 【학사학위취득 유예】 ①제45조제1항에 의거 학위취득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신설 2019.2.21)

제46조 【졸업시기】 ①졸업은 전기 졸업과 후기 졸업으로 구분한다.

- ② 1학기말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③ 전기 졸업탈락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부족학점에 대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삭제

제12장 포상 및 징계

- 제47조 【포상 및 징계】 ① 품행이 단정하고 바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학생은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규정」에 따른다.

(조개정 2018.6.26.)

제48조 【징계】 (삭제 2018.6.26.)

- 제49조 【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 따른다.

(조개정 2018.6.26.)

제13장 학생활동

- 제50조 【학생자치활동과 그 지원】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단체를 둔다.
② 본교는 제2조가 정하는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조개정 2018.6.26.)

제51조 【학생의 일반의무】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조개정 2018.6.26.)

제52조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광고·인쇄물의 교내 부착과 배부
2. 교내 시설물의 점유·사용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4.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 및 집회 등
- (조개정 2018.6.26.)

제53조 【간행물】 (삭제 2018.6.26.)

제54조 【학생을 위한 상담·지도 등】 학생의 학업, 진로 등 학교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센터, 지도 교수 등을 둘 수 있다.(조개정 2018.6.26.)

제55조 【위원회 등】 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학생지도위원회,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 따른다.

(조개정 2018.6.26.)

제55조의2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삭제 2018.6.26.)

제14장 등록금

제56조 【등록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②등록금을 납부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등록금은 수강학점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 【납입금의 납부시기】 삭제

제58조 【등록금의 심의 및 공시】 ①본 대학교에서 징수하는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19)
②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1.19)
③등록금의 금액 및 등록기일은 매학기 초에 이를 공시한다.
④총장은 필요시 수업연한 4년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제59조 【등록금의 감면】 등록금은 관계 법령과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60조 【반환】 등록금(입학금포함)은 관계법령과 따로 규정된 사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장 장학금

- 제61조 【장학금】 ①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학생(신입생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62조 【위탁생】 정부 및 각급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3조 【위탁생의 제명】 위탁생이 수업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 제64조 【특례입학】 ①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정규학생으로 입학·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2학년으로의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조개정 2012.9.10.)

제65조 【학칙 준용】 위탁생 및 특례입학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7장 공개강좌

- 제66조 【공개강좌 개설】 ①본 대학교에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열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장소, 수강 자격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장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

제67조 【교수회의】 ①본 대학교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②교수회의는 전체교수회의와 대학별 교수회의로 나눈다.

③전체교수회의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의는 대학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총장, 부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8조 【교수회의의 기능】 ①전체교수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대학별 교수회의는 총장이 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69조 【교무위원회】 ①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 주요 보직자 및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2.12.)

제70조 【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 또는 학부(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상벌에 관한 사항

5.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2.12.)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2.12.)

제19장 대학원

제71조 【대학원】 ①본 대학교에 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예술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둔다.(개정 2012.5.29.)

②각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4.30.)

제20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72조 【부속 및 부설기관, 연구소 및 기타 기관】 ①본 대학교의 운영과 대외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제1항에 의해 설치 또는 위탁 운영되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제73조 【산학협력단】 ①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의2 【계약학과】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외국을 포함한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2.5.29.)

제22장 협성대학교 도서관

(장신설 2016.8.22.)

제74조 【도서관】 ①본 대학교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 【운영】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운영한다.

제76조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교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장 학칙의 개정

(장신설 2018.6.26.)

제77조 【개정 절차】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교무처는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교무처는 공고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한다.
3.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
4. 교무위원회의 심의
5.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6.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의 승인
7. 확정·공포 및 시행

제78조 【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의 협성신학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은 협성대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학과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학부에, 영어영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영어학과에, 교회음악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음악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의 제22조, 제24조, 제36조 및 제37조는 199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복학, 재입학,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당해 연도 재학생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로 통합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1년 2월말까지는 동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1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학과가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 가. 경영정보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재적생은 “경영정보학부”재적
생으로 본다.
 - 나. 유통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 광고홍보학과 재적생은 “국제마케팅학부”재
적생으로 본다.
 - 다. 실내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재적생은 “조형학부”재적생으
로 본다.
3.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의 제31조제2항은 199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로 통합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2년 2월말까지는 동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2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학과가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 가. 사회복지학과(주) 재적생은 “사회복지학부”재적생으로 본다.
 - 나. 사회복지학과(야), 영유아보육학과 재적생은 “사회복지학부(야)” 재적생으
로 본다.
 - 다. 도시계획공학과(주·야) 재적생은 “도시건축공학부(주·야)”재적생으
로 본다.

3. (전공학과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1998학년도 입학자로서 조형학부(주·야)재적생은 2002년 2월말까지는 동 학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2년 3월 1일부터는 환경조형(주·야) 전공 학생은 미술학과로 실내디자인(주·야) 전공학생 및 시각미디어(주·야) 전공학생은 디자인(주·야)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4. (학과(부)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영어영문학과에, 중국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중어중문학과에, 국제마케팅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상학부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의 제30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9학년도 입학자로서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 변경 승인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3년 2월말까지 야간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3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중어중문학과(야) 재적생을 중어중문학과(주)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컴퓨터공학과(야) 재적생을 컴퓨터공학과(주) 재적생으로 본다.
 - 다. 보건관리학과(야) 재적생을 보건관리학과(주) 재적생으로 본다.
 - 라. 음악학과(야) 재적생을 음악학과(주) 재적생으로 본다.
3. (학과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지역사회개발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지역개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과) 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4년 2월말까지 동학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4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사회복지학부(주)의 재적생은 사회복지학과(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사회복지학부(야)의 사회복지전공의 학생은 사회복지학과(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다. 사회복지학부(야)의 아동보육전공 학생은 아동보육학과(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라. 경영정보학부의 금융보험전공, 세무회계전공의 학생은 금융세무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마. 경상학부의 광고홍보전공의 학생은 광고홍보영상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바. 경상학부의 국제통상전공, 유통경영전공의 학생은 유통·통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 사. 디자인학부(주·야)의 실내디자인전공의 학생은 실내디자인학과(주)의 재적생으로 본다.
- 아. 디자인학부(주·야)의 산업디자인전공의 학생은 가구디자인학과(주), 제품디자인학과(주), 시각디자인학과(주)의 재적생으로 본다.
- 자. 1998학년도 조형학부 환경조형(주·야) 전공학생은 미술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 1.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2003년 3월 1일부터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경영정보학부는 경영정보학과, e-비지니스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나. 금융·세무학부는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다. 유통·통상학부는 유통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라. 광고홍보영상학부는 광고홍보·컨텐츠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마. 도시건축공학부는 도시공학과, 건축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2. (복학생 경과조치) 학부 재적생 중 전공배정 이전에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과 절차에 따라 소속학과를 배정, 인정한다.
- 3. (입학시기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2001년 3월 1일부터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디자인학부(주·야)의 실내디자인전공의 학생은 실내디자인학과(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나. 디자인학부(주·야)의 산업디자인전공의 학생은 가구디자인학과(주), 제품디자인학과(주), 시각디자인학과(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디자인학부 재적생 중 전공배정 이전에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과 절차에 따라 실내디자인학과 또는 시각디자인학과로 배정,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과) 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2003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7년 2월말까지 동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보며 2007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①영어영문학과의 재학생은 어문학부 영어영문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②중어중문학과의 재학생은 어문학부 중어중문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③사회복지학과(주·야)의 재학생은 사회복지학부(주·야)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④아동보육학과의 재학생은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⑤도시 및 지역학부의 재학생은 도시·지역학부(주)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⑥경영정보학과, e-비지니스학과의 재학생은 경영학부(주) 경영정보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⑦금융보험학과의 재학생은 경영학부 금융보험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⑧세무회계학과의 재학생은 경영학부 세무회계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⑨광고홍보·컨텐츠학과의 재학생은 경상학부 광고홍보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⑩유통경영학과의 재학생은 경상학부 유통경영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⑪국제통상학과의 재학생은 경상학부 국제통상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⑫도시공학과(주·야)의 재학생은 도시·건축공학부(주·야)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⑬건축공학과의 재학생은 도시·건축공학부(주) 건축공학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⑭실내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⑮제품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⑯시각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다.

⑯가구디자인학과의 재적생은 조형학부 가구공예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⑰미술학과의 재적생은 조형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⑲음악학과의 재적생은 음악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조치) 2004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2월말까지 동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8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①어문학부 영어영문전공의 재적생은 영어영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어문학부 중어중문전공의 재적생은 중어중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사회복지학부(주·야)의 재적생은 사회복지학과(주·야) 재적생으로 본다.

④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의 재적생은 아동보육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동일학부에서 전공명이 변경된 전공의 경과조치) 2004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각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2월말까지 동전공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8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①조형학부 평면조형, 입체조형전공의 재적생은 조형학부 미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조형학부 가구공예전공 재적생은 조형학부 가구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제4조 (대학·학부·학과(전공) 및 정원) [별표1] 변경내용은 2009학년

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 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9년 2월말까지 동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보며 2009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①경영학부 경영정보전공의 재학생은 경영정보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②경영학부 금융보험전공의 재학생은 금융보험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③경영학부 세무회계전공의 재학생은 세무회계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④경상학부 광고홍보전공의 재학생은 광고홍보영상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⑤경상학부 유통경영전공의 재학생은 유통경영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⑥경상학부 국제통상전공의 재학생은 국제통상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⑦도시건축공학부 도시공학전공의 재학생은 도시공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⑧도시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의 재학생은 건축공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⑨조형학부 미술전공의 재학생은 조형회화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⑩조형학부 가구전공의 재학생은 가구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⑪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의 재학생은 실내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⑫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전공의 재학생은 제품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⑬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의 재학생은 시각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 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신학부 및 도시·지역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2년 2월 말까지 동 학부의 재학생으로 보며 2012년 3월 1일 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단, 2011학년도 이전에 도시·지역학부 입학생으로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재학생(재입학자 포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시행정학과 또는 지역개발학과로 소속을 배정한다.
 - ①신학부 각 전공의 재학생은 신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②도시·지역학부 도시행정전공의 재학생은 도시행정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③도시·지역학부 지역개발전공의 재학생은 지역개발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3.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도시행정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5년 2월 말까지 도시행정학과(야)의 재학생으로 보며 2015년 3월 1일 부터는 도시행정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제58조 각 항은 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영정보학과 재학생은 2013년 2월 말까지 동 학과 재학생으로 보며, 2013년 3월 1일부터 경영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3. (학과에서 학부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 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광고홍보 영상학과 및 유통경영학과 재학생은 2013년 2월 말까지 동 학과 재학생으로 보며, 2013년 3월 1일 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 ① 광고홍보영상학과 재학생은 미디어광고영상학부 광고홍보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 ② 유통경영학과 재학생은 관광유통경영학부 유통경영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4.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 조치) 2012년 이전에 입학한 음악학부 재학생은 2013년 2월 말까지 동 학부 재학생으로 보며, 2013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①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재학생은 피아노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②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재학생은 관현악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③ 음악학부 성악전공 재학생은 성악·작곡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④ 음악학부 작곡전공 재학생은 성악·작곡과 재학생으로 본다.
- ⑤ 음악학부 합창지휘전공 재학생은 2016년 2월 말까지 동 학부 재학생으로 보며, 2016년 3월 1일부터는 성악·작곡과 재학생으로 본다. 단, 2012년 이전에 합창지휘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위증에 합창지휘전공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6.8.22.)

5.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회복지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 도시공학과(야) 재적생은 2016년 2월 말까지 동 학과(야) 재적생으로 보고 경영정보학과(야) 재적생은 2016년 2월말까지 경영학과(야) 재적생으로 보며, 2016년 3월 1일 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개정 2013.8.20.)
 - ①사회복지학과(야) 재적생은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②경영학과(야) 재적생은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③도시공학과(야) 재적생은 도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0년 2월말까지 동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보며 2020년 3월부터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가. 지역개발학과와 도시행정학과의 재학생은 도시개발·행정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나. 경영대학 미디어광고영상학부의 재학생은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다.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재학생은 글로벌 경영대학 미주통상·문화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라.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재학생은 글로벌 경영대학 중국통상·문화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마.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의 재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글로벌 경영대학 미주통상·문화학과 또는 중국통상·문화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바. 금융보험학과와 세무회계학과의 재학생은 금융·세무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사. 관광·유통경영학부의 재학생은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아. 피아노과와 관현악과의 재학생은 기악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 자. 가구디자인학과와 실내디자인한과의 재학생은 생활공간디자인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차. 조형회화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시각조형디자인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카. 제품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산업디자인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생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변경 이전의 학부(과) 또는 전공의 제증명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재입학을 하는 경우 2017학년도 학사편제에 따른 통·폐합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한다.

3. (계약학부에 관한 학칙 제·개정) 계약학부 운영에 관한 학칙 제·개정은 총장의 제정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시행일) 2016년 8월 22일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0년 2월 말까지 동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보며 2020년 3월부터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학부(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가. 실내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생활공간디자인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나. 시각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시각조형디자인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다. 조형회화학과, 가구디자인학과의 재학생은 생활공간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 중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③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재입학을 하는 경우 2017학년도 학사편제에 따른 통합과 통·폐합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3.)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제43조의 변경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8.14.)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4.)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24.)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별표1] 마.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에 따른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5년 2월말까지 동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25년 3월부터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중국통상·문화학과의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국어문화학과 또는 글로벌통상·문화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나. 도시개발·행정학과의 재적생은 도시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다. 금융·세무학과의 금융보험, 세무회계 트랙의 재적생은 각각 금융보험학과와 세무회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라.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의 호텔관광경영, 유통경영 트랙의 재적생은 각각 호텔관광경영학과와 유통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마. 미주통상·문화학과의 재적생은 글로벌통상·문화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바.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의 재적생은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사. 기악과의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의 재적생은 각각 음악학부 피아노전공과 관현악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아. 성악·작곡과의 성악전공, 작곡전공의 재적생은 각각 음악학부 성악전공과 실용음악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자. 생활공간디자인학과의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내디자인학과 또는 가구디자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차. 시각조형디자인학과의 재적생은 시각디자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생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2025년 3월 이후이라도 변경 이전의 학부(과) 또는 전공의 제증명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재입학을 하는 경우 2022학년도 학사편제에 따른 학과(부)로 재입학을 허용한다.

[별표1]대학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개정 2012.05.29.)(개정 2012.12.28.)(개정 2014.8.12.)(개정 2016.8.22.)(개정 2017.8.16.)(개정 2018.1.9.)(개정 2018.11.16.)(개정 2019.10.21.)(개정 2020.12.14.)(개정 2021.2.24.)

가. 2014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신학대학	신학과	80	신학사
인문사회 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40	문학사
	중어중문학과	35	
	문예창작학과	35	
	사회복지학과	70	
	아동보육학과	45	
	지역개발학과	40	경제학사
	도시행정학과	40	행정학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50	경영학사
	금융보험학과	40	
	세무회계학과	40	
	관광·유통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전공	
		유통경영전공	
	미디어광고영상학부	미디어영상전공	광고홍보학사
		광고홍보전공	
	국제통상학과	40	무역학사
이공대학	도시공학과	50	공학사
	건축공학과	40	
	컴퓨터공학과	40	
	보건관리학과	45	이학사
예술대학	피아노과	25	음악학사
	관현악과	17	
	성악·작곡과	18	
	조형회화학과	30	미술학사
	가구디자인학과	30	디자인학사
	실내디자인학과	30	
	제품디자인학과	30	
	시각디자인학과	30	
교양교직학부		-	
융복합전공	지식창업트랙	-	창업학사
	자아실현과 창의성학트랙	-	자아실현과 창의성학사
합 계		1,080명	

나. 2015~2016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신학대학	신학과	79	신학사
인문사회 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39	문학사
	중어중문학과	34	
	문예창작학과	34	
	사회복지학과	70	
	아동보육학과	45	
	지역개발학과	39	경제학사
	도시행정학과	38	행정학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49	경영학사
	금융보험학과	40	
	세무회계학과	40	
	관광·유통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전공	
		유통경영전공	
	미디어광고영상학부	미디어영상전공	광고홍보학사
		광고홍보전공	
	국제통상학과	39	무역학사
이공대학	도시공학과	48	공학사
	건축공학과	39	
	컴퓨터공학과	38	
	보건관리학과	45	이학사
예술대학	피아노과	24	음악학사
	관현악과	16	
	성악·작곡과	17	
	조형회화학과	29	미술학사
	가구디자인학과	29	디자인학사
	실내디자인학과	30	
	제품디자인학과	30	
	시각디자인학과	30	
교양교직학부		-	
융복합전공	지식창업트랙	-	창업학사
	자아실현과 창의성트랙	-	자아실현과 창의성학사
합 계		1,060명	

다. 2017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신학대학	신학과	75	신학사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32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65	
	아동보육학과	43	
	도시개발·행정학과(*)	70	행정학사
	미디어영상광고학과	65	광고홍보미디어학사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45	경영학사
	금융·세무학과(*)	74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	64	
	미주통상·문화학과	48	무역학사
	중국통상·문화학과	48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38	공학사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	37	
	건축공학과	38	
	도시공학과	38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45	
	생명과학과	38	
예술대학	기악과	35	음악학사
	성악·작곡과	13	
	생활공간디자인학과	43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43	
	시각조형디자인학과	43	
교양교직학부		—	
융복합전공	자아실현과 창의성	—	자아실현과 창의성 학사
	지식창업	—	지식창업 학사
	관광디자인	—	관광디자인 학사
	미디어콘텐츠창작과정	—	미디어콘텐츠창작 학사
	중국관광 비즈니스	—	중국관광 비즈니스 학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 학사
	문화예술 복지전문가	—	문화예술복지 전문 학사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학사
합 계		1,040명	—

(*)는 트랙으로 운영되는 학과임

라. 2018~2020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신학대학	신학과	75	신학사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62	
	아동보육학과	42	
	도시개발·행정학과(*)	66	행정학사
	미디어영상광고학과	62	광고홍보미디어학사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44	경영학사
	금융·세무학과(*)	72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	62	
	미주통상·문화학과	46	무역학사
	중국통상·문화학과	46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36	공학사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	33	
	건축공학과	38	
	도시공학과	38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43	
	생명과학과	34	
예술대학	기악과	33	음악학사
	성악·작곡과	13	
	생활공간디자인학과	43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43	
	시각조형디자인학과	43	
웨슬리창의융합대학		—	
융복합전공	자아실현과 창의성	—	자아실현과 창의성 학사
	지식창업	—	지식창업 학사
	관광디자인	—	관광디자인 학사
	미디어콘텐츠창작과정	—	미디어콘텐츠창작 학사
	중국관광 비즈니스	—	중국관광 비즈니스 학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 학사
	문화예술 복지전문가	—	문화예술복지 전문 학사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학사
합 계		1,004명	—

(*)는 트랙으로 운영되는 학과임

마.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신학대학	신학과	75	신학사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62	
	아동보육학과	42	
	도시개발·행정학과(*)	66	행정학사
	미디어영상광고학과	62	광고홍보미디어학사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44	경영학사
	금융·세무학과(*)	72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	62	
	미주통상·문화학과	46	무역학사
	중국통상·문화학과	46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36	공학사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	33	
	건축공학과	38	
	도시공학과	38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43	
	생명과학과	34	
예술대학	기악과	33	음악학사
	성악·작곡과	13	
	생활공간디자인학과	43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43	
	시각조형디자인학과	43	
웨슬리창의융합대학		—	
융복합전공	자아실현과 창의성	—	자아실현과 창의성 학사
	지식창업	—	지식창업 학사
	미디어콘텐츠창작과정	—	미디어콘텐츠창작 학사
	중국관광 비즈니스	—	중국관광 비즈니스 학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 학사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학사
	법무인재양성	—	법학사
합 계		1,004명	—

(*)는 트랙으로 운영되는 학과임

바. 2022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신학대학	신학과	65	신학사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5	예술학사/체육학사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35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보육학과	40	
	중국어문화학과	35	
	도시행정학과	40	행정학사
경영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과	62	광고홍보미디어학사
	경영학과	45	경영학사
	금융보험학과	35	
	세무회계학과	35	
	호텔관광경영학과	30	
	유통경영학과	30	
	글로벌통상·문화학과	35	무역학사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소프트웨어공학과	35	
	건축공학과	35	
	도시공학과	35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40	
	생명과학과	35	
예술대학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음악학사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실내디자인학과	40	디자인학사
	가구디자인학과	25	
	산업디자인학과	45	
	시각디자인학과	45	
웨슬리창의융합대학		-	
융복합전공	자아실현과 창의성	-	자아실현과 창의성 학사
	지식창업	-	지식창업 학사
	미디어콘텐츠창작과정	-	미디어콘텐츠창작 학사
	중국관광 비즈니스	-	중국관광 비즈니스 학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 학사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	공동체와 문화예술기획 학사
	법무인재양성	-	법학사
합 계		1,004명	-

[별표1-2]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신설 2012.05.29.)(개정 2012.12.28.)(개정 2014.2.14.)(개정 2014.8.12.)(개정 2016.8.22.)(개정 2018.1.9.)(개정 2018.11.16.)(개정 2019.12.23.)(개정 2020.12.14.)

가. 2015~2016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비고
계약학부	아동보육학과	80	문학사	정원외 모집, 재교육형
	사회복지학과	80	문학사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행정학과	40	행정학사	
	컴퓨터전자기계공학과	40	공학사	
	실용음악학과	40	음악학사	
	유통경영학과	40	경영학사	
총 계		360명		

나. 2017~2018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비고
계약학부	아동보육학과	80	문학사	정원외 모집, 재교육형
	사회복지학과	80	문학사	
	유통경영학과	40	경영학사	
총 계		200명		

다. 2019~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비고
계약학부	아동보육학과	40	문학사	정원외 모집, 재교육형
	사회복지학과	40	문학사	
총 계		80명		

[별표 2](개정 2013.8.20.)(개정 2014.2.14.)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학사)

일반복수전공 ○○○○ (○○학사)

융복합복수전공 ○○○○트랙(○○학사)

일반부전공 ○○○○

융복합부전공 ○○○○트랙

연계부전공 ○○○○트랙

년 월 일

협성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등록번호 :

[별표 3](개정 2012.05.29.)(개정 2012.12.28.)(삭제 2016.8.22.)